

의안번호	제 205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황 규 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5월 31일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황규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
----------	-----

발의연월일: 2019년 5월 31일

발 의 자: 황규철,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박성원, 이의영,
임기중의원

1. 제안이유

충청북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와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목적(안 제1조)
-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라.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마. 교육균형발전 예산의 규모(안 제6조)
- 바. 지원계획 등 심의(안 제7조)
- 사. 평가(안 제8조)
- 아. 관계기관과의 협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예산팀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42호

2019. 5. 21. ~ 2019. 5. 28.(특이의견 없음)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액배분”이란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이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2. “비법정전입금 수입”이란 교육비특별회계 수입과목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을 말한다.
3. “지역발전도 조사”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각 시·군별 불균형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저발전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저소득 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가정을 말한다.
5. “다문화 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6. “탈북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받는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지표를 활용한 교육지원청별 예산 총액배분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내 시·군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비법정전입금 수입과 교육 경비보조금 등의 비율
2. 충청북도의 지역발전도 조사결과
3. 학교별 전체 학생 수 대비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수 비율
4. 최근 3년 간 학생 수 감소율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교육균형발전 예산의 규모)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본예산 규모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직전연도 교육경비보조금의 총액 범위 내로 한다.

제7조(지원계획 등 심의) ①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균형발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균형발전 지원예산 규모에 관한 사항
3.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8조(평가) 교육감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관 계 법 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②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7.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9.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10.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및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14.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15.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 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3. 20.>

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 1. 7.>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 1. 7., 2017. 10. 31., 2018. 3. 20.>

1. 시·도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 1의2. 직전 시·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시·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
 6. 시·도 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7.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9.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7.>
-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7., 2018. 3. 20.>
- ⑤ 시·도 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7.>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교육경비보조 제한지역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한 균형예산 지원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제한) 지방채 발행 보조,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총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비법정 전입금 수입과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 지역 발전도,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감소율 등 지표를 적용하여 지역별 균형예산 지원

3. 관련조문

- 제5조(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지표를 활용한 교육지원청별 예산 총액배분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내 시·군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비법정전입금 수입과

교육경비보조금 등의 비율

2. 충청북도의 지역발전도 조사결과
3. 학교별 전체 학생 수 대비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수 비율
4. 최근 3년 간 학생 수 감소율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6조(교육균형발전 예산의 규모)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본예산 규모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직전연도 교육경비보조금의 총액 범위 내로 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교육경비보조 제한지역의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

나. 추계 결과

1) 최근 3년 간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지방자치단체명	교육경비보조금			비고
	2017	2018	2019	
청주시	1,150,000	0	36,000	
충주시	1,192,460	1,264,743	1,407,000	
제천시	774,921	508,271	504,451	
보은군	0	0		
옥천군	0	0		
영동군	0	0		
진천군	1,004,780	1,089,780	1,100,780	
괴산군	0	0		
증평군	0	100,000		
음성군	3,500	182,525	73,200	
단양군	0	0		
합계	4,125,661	3,145,319	3,121,431	

※ 다목적교실 증축, 기숙사 증축, 태양광발전시설, 무상급식·친환경식재료 지원을 제외한 교육경비보조금

2)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 한도액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본예산	0.3%	본예산	0.3%	본예산	0.3%	본예산	0.3%	본예산	0.3%
본예산 규모의 0.3%	26,903	81	31,562	95	32,701	98	33,931	102	35,504	107
교육경비보조금 추계	34		34		34		34		34	

※ 2020년도부터 연도별 본예산 규모는 중기재정계획의 자료 활용

※ 교육경비보조금 추계는 2017~2019년도 평균 지원액 적용

3)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액 추계

(단위: 억원)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지원한도	34	34	34	34	34	교육경비보조금 추계

※ 추계금액은 한도액으로 위 규모 내에서 교육감이 결정·지원

4)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 대상지역

(1) 대상: 보은, 옥천, 영동, 단양, 괴산중평교육지원청

※ 지원대상은 변동될 수 있음

(2) 교육지원청별 평균 지원액

(단위: 억원)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평균지원액	6.8	6.8	6.8	6.8	6.8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17,000,000	
보통교부금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17,000,000	
세 출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17,000,000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17,000,000	
재원 조달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17,000,000	
의존 재원	소 계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17,000,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17,000,0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